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2. 자본금·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거나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사업계획서 7. 전자문서 중계망 운영에 관한 업무설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 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신원 증명서에 같음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